

# 신호시스템보수규정 <sup>1995. 6. 15</sup> [규정 제47호]

신호처 02-6311-2428

개정	1999. 10. 1	규정 제153호
	2002. 1. 1	규정 제220호
	2003. 8. 1	규정 제252호
	2006. 5. 15	규정 제335호
	2008. 6. 24	규정 제424호
	2009. 3. 26	규정 제458호
	2009. 9. 17	규정 제494호
	2010. 7. 26	규정 제548호
	2011. 9. 26	규정 제610호
타 규정 개정	2012. 2. 13	규정 제635호
	2014. 1. 23	규정 제733호
타 규정 개정	2014. 9. 17	규정 제757호
	2014. 12. 26	규정 제777호
	2015. 11. 3	규정 제863호
	2016. 12. 26	규정 제904호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신호시스템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열차운전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10.1, 10.7.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호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신호기장치, 연동장치, 선로전환장치, 궤도회로장치, ATC/ATO장치, CTC/TTC장치 그 밖의 신호관련 장치를 말한다.(개정 99.10.1, 09.9.17, 10.7.26)

- 신호기 장치

·입환신호기:차량을 결합·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고자 하는 차량으로 하여금 신호기 뒷방향으로의 진입의 가부를 지시하는 신호기(개정 09.9.17)

- 신호 부속기

·진로개통표시기:차내신호를 사용하는 본선구간 선로의 분기부에 설치하여 진로의 개통상태를 표시하는 장치(개정 14.1.23)

·진로표시기:입환신호기 또는 진로개통표시기에 부속하여 열차 또는 차량의 진로를 표시하는 장치(개정 09.9.17, 14.1.23)

- 전자연동장치 : 진로 및 신호를 모듈화된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제어 쇄정하는 장치(개정 14.1.23)

- 선로전환기 장치 : 분기기의 텅레일을 전환하고 쇄정하는 장치(개정 14.1.23)

- 궤도회로장치:열차의 유무를 검지하는 장치

- ATC/ATO 지상장치

- ATC 장치:열차를 자동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속도코드를 송신하는 장치
  - ATO 장치:열차를 자동으로 운행하기 위한 정보를 송·수신하는 장치
  - 정차표시등(Dwell Light) : 정거장에서 정차중임을 표시하는 장치(개정 14.1.23)
  - 정위치정차표시기(PSM) : ATO 운전시 열차의 정위치정차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수동장치(개정 14.1.23)
  - TWC 장치:ATO 운전정보를 지상과 열차간 송수신 하는 장치
  - CTC/TTC 장치
  - CTC 장치:중앙에서 열차를 일괄 제어하는 장치
  - Local CTC 장치:각 역에서 연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집중제어하는 장치 (개정 09.9.17, 14.1.23)
  - TTC 장치:종합열차운행 집중제어 장치
  - LDTS 장치 : 열차집중제어장치와 Local CTC(LCTC) 장치간에 정보를 송·수신하는 장치로 표시하는 장치(신설 10.7.26, 개정 14.1.23)
  - 대형표시반 : 열차운행상황 또는 각종 현장설비의 제어설정상태 및 표시상태를 현시하는 장치(신설 10.7.26, 개정 14.1.23)
  - 삭제(15.11.3.)
  - 열차정보제어장치:차량기지 검사고에 입, 출고하는 열차 또는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를 시행하는 장치(신설 2002.1.1)
  - 분기기 전기히팅장치 : 분기기 텅레일의 눈 또는 얼음에 열을 가하여 제거해주는 장치 (신설 2008.6.24, 개정 14.1.23)
  - 곡선승강장경고등장치 : 급곡선 승강장에 열차가 정차시 점멸하는 장치(신설 14.2.1)
2. “신호원”이란 신호시스템의 유지보수, 신호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신설 99.10.1, 10.7.26)
  3. “유지보수업무”란 신호시스템의 기능유지를 위한 점검, 검사, 개량, 보수 등의 관리 업무를 총칭한다.(신설 99.10.1, 10.7.26)
  4. “신호취급업무”란 TTC 제어시 관련 신호시스템을 감시하고 현장 제어시(Local) 열차 또는 차량 운행의 통제, 진로제어 등을 수행하며 관련 신호시스템을 운용·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신설 99.10.1, 10.7.26)
  5. “점검”이란 시스템의 운전상태, 청결상태 및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0.7.26)
  6. “검사”란 검사기준에 의하여 시스템의 상태 및 동작 등을 조사,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0.7.26)
  7. “보수”란 신호시스템의 불량부분 및 장애발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을 조정, 수리 또는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0.7.26)

8. “순회”란 시스템의 기능 동작상태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의 장치가 설치된 장소를 순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0.7.26)

9. “기능유지”란 시스템의 기능이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0.7.26)

10. “교체”란 설비의 노후, 고장 등으로 보수가 불가하거나 계속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다른 설비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0.7.26, 14.12.26)

11. “개량”이란 설비의 노후, 고장 등으로 계속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 개선, 부품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4.12.26)

12. “기대수명”이란 시스템의 설치 당시에 기대했던 기능과 성능을 유지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신설 14.12.26)

13. “열차집중제어장치 유지관리 담당자”(이하 “유지관리자”라 한다)란 열차집중제어 장치의 운용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10.7.26, 개정 14.12.26)

14. “중점관리개소”란 현장 신호설비가 설치된 개소 중 사용 빈도가 높고 이례상황 발생 시 열차 정시 및 안전운행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개소 또는 개소의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16.12.26)

제3조(유지보수작업 시행상의 주의) 기술사업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은 유지보수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열차 또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한 후 시스템의 사용정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99.10.1, 08.6.24, 09.9.17, 10.7.26, 11.9.26, 14.1.23, 14.9.17)

제4조(보수작업·개량공사 시행 후의 확인) ①작업책임자는 보수작업·개량공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시스템이 정상상태에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장에게 작업종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99.10.1, 10.7.26, 14.1.23, 14.12.26)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소장은 취급에 지장이 있고,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0.7.26, 14.1.23)

③열차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수·개량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작업과 관련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최초 열차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14.12.26)

[조 제목 개정 14.12.26]

제5조(시스템의 사용을 정지하는 경우의 처치) ①진로개통표시기, 입환신호기(신호부속기 제외)의 사용을 정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신호취급상 정지로 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99.10.1)

1. 사용을 정지하는 진로개통표시기, 입환신호기를 소등하고 전면에 흰색의 나무로 십자 표지를 붙이던가 또는 진로개통표시기, 입환신호기를 측면으로 향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9.10.1, 09.9.17)
2. 신설 진로개통표시기, 입환신호기에 대하여서도 전호와 동일한 처치를 한다.(개정 99.10.1)

3. 일시적으로 상용폐색방식을 변경하여 대용폐색방식 또는 폐색준용법을 시행하는 때에는 제1호의 처치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선로전환기의 사용을 정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99.10.1)

1. 소장은 동력을 제거하고 자동 및 수동동작이 되지 않도록 채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99.10.1, 08.6.24)

2. 시스템에 관계 있는 진로의 진로개통표시기 및 입환신호기의 사용을 정지하여야 한다.(개정 99.10.1)

③신호레버를 사용 정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2.1.1, 2003.8. 1, 2010.7.26)

1. 신호레버에 의하여 조작되는 진로개통표시기, 선로전환기 등의 사용을 정지하여야 한다.(개정 99.10.1, 2003.8. 1)

2. 신호레버와 관계를 갖는 다른 신호레버 또는 시스템의 사용을 정지하여야 한다.(개정 99.10.1, 2003. 8. 1)

(주1) “신호레버”란 레버, 푸시버튼, 마우스, 키보드를 말한다.(신설2003. 8. 1, 개정 2010.7.26)

제6조(지장물이 있을 때의 처리) 진로개통표시기, 입환신호기의 신호현시를 분별하기 어렵게 하는 지장물 또는 신호현시를 방해하는 시설물 그 밖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지장물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제거 또는 이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9.10.1, 09.9.17)

제7조(금지사항) ①누구를 막론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 중인 계전기, 회로제어기, 그 밖의 접점에 도선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접속하는 일.(개정 99.10.1, 09.9.17)

2. 배선용 차단기 또는 퓨우즈를 다른 도체로 대응하는 일.

3. 사장의 승인 없이 장치의 변경, 소프트웨어를 변경시키는 일. 다만, 조건상 보완이 필요할 시 소장 승인으로 변경 보완할 수 있다.

4. 레버, 푸시버튼, 마우스, 키보드 그 밖에 취급자가 정하여져 있는 것을 무단히 취급하는 일.(개정 2002.1.1, 09.9.17)

5. 지정된 종별의 계전기, PCB를 이외의 것으로 대응하는 일

6. AF레도회로의 사용주파수를 변경하는 일

7. AF레도회로의 지시속도 코드비를 변경하는 일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스템의 사용을 정지한 경우 또는 운용중인 시스템에서 분리되었을 경우에만 이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99.10.1)

1. 전자연동장치, 직병렬 컨버터 장치, TWC 장치, ATO 장치, SCU 장치, LDTS 장치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일(개정 99.10.1, 2002.1.1)

2. 전자연동장치, 직병렬 컨버터 장치, TWC 장치, ATC 장치, ATO 장치, LDTS 장치 조정기의 설

정위치를 변경하는 일(개정 99.10.1, 2002.1.1)

3. 계전기 또는 그 밖의 기기를 정당한 조건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원으로 직접 동작시키는 일(개정 09.9.17)

4. 봉인된 계전기의 봉인을 뜯는 일. 다만, 소장의 승인 하에 뜯을 수 있다.

5. 계전기의 접극자를 눌러서 접점을 구성시키는 일

제8조(작업 안전사항 준수) 신호원은 작업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시에는 항상 제규정에 의한 작업규칙을 지킨다.

2. 선로순회시 열차 진입방향으로 대향통행을 하고 지적환호를 한다.

3. 작업조 편성 시 반드시 한사람 이상의 열차감시자를 지정하고 열차감시자는 임무를 철저히 수행한다. 단, 열차 감시자는 작업조 편성 중 소장 또는 파트리더가 지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08.6.24)

4. 작업 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불완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5. 타 분야의 시스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관계직원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개정 99.10.1)

6. 그 밖의 사항은 도시철도 신호원 안전수칙을 준수한다.(개정 09.9.17)

제9조(보수작업 시 휴대품) 보수작업을 할 때에는 소장 지시에 따라 시행하며 필요한 공구, 자재, 관련도면 등을 휴대하여야 하며 점검항목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99.10.1, 08.6.24, 14.2.1)

제10조(잠가야 할 시스템) 시스템은 모두 잠기어야 하며 잠기어야 할 기기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곳은 고리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99.10.1)

1. 선로전환기 외함, 선로전환기 수동부분 개폐기, 신호기계실, 신호취급실, 신호기구함, 신호접속함,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스템(개정 99.10.1, 09.9.17)

2. 신호기계실은 각종 재해와 비상시를 대비하여 열쇠(Master Key)를 역장이 보관할 수 있으나 용도 이외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도표류의 정비) ①소장은 신호기계실, 신호취급실, 신호접속함 등의 보수작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와 같은 각종 도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0.7.26, 14.1.23, 15.11.3.)

1. 연동도표 (신설 15.11.3.)

2. 궤도회로도 (신설 15.11.3.)

3. 기구함(접속함)단자도표 (신설 15.11.3.)

4. 결선도 (신설 15.11.3.)

5. 기타 유지보수에 필요한 도표류 (신설 15.11.3.)

②소장은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즉시 도표류를 일관성 있는 표기방법으로 수정하고

수정일자, 수정인, 수정근거를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4, 10.7.26, 14.1.23)

1. 시설물의 소프트웨어 변경
2. 시설물의 회로변경 및 개량
3. 시설물의 철거 또는 폐지
4. 그 밖의 도표류를 정정할 사유가 있을 때(개정 09.9.17)

제12조(계기, 측정기류의 교정) 소장 또는 기술지원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은 계기 및 측정기류의 양·부를 검사하여 정정하고 교정표를 첨부하여야 하며, 시행주기는 단장이 정한다.(개정 2008.6.24, 2009.3.26, 09.9.17, 10.7.26 12.2.13, 14.1.23)

제13조(예비기기의 정비) 소장은 예비기기를 항상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4, 09.9.17,10.7.26, 14.1.23)

제14조(기호 및 번호 등의 표시) 기기, 기구함 등 그 밖에 필요한 시스템에는 보기 쉬운 곳에 기호 또는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99.10. 1, 09.9.17)

제15조(시설물대장 관리) 소장은 해당 시설물의 시스템별, 수량 및 사용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신설, 이설, 증설, 개량이 있을 때에는 시스템별, 수량, 사유 등을 파악하여 수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9.10.1, 08.6.24, 10.7.26, 14.1.23)

## 제 2 장 고장 및 보고

제16조(고장의 처리) 시스템에 고장 또는 고장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조정,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고장이 경미하여 당분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부분에 표시를 하고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한다.(개정 99.10.1)

제17조(중대한 고장의 처리) 소장은 중대한 고장 또는 착오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원인이 타 시스템에 관계 있거나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소장은 관련 주무부서장 및 종합관제센터장에게 보고하여 시스템의 사용을 중지한 상태에서 원인규명 및 고장개소를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99.10.1, 2006.5.15, 2008.6.24, 10.7.26, 14.1.23)

제18조(고장원인 조사 및 복구할 때의 연락 및 협의) 고장원인 조사, 복구를 할 때에는 관계부서와 상호연락, 협의 등을 긴밀하게 하고 다른 고장을 병발시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의 처치) ①검사책임자는 관계직원으로부터 시스템의 고장 및 사고의 통보를 받았거나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종합관제센터장 및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신호고장, 사고 및 통신두절 등의 경우에는 복구 후에 보고할 수 있다.(개정 99.10.1, 2006.5.15, 2008.6.24, 10.7.26, 14.1.23)

②검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스템의 사용정지 및 범위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종합관제센터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99.10.1, 2006.5.15, 2008.6.24, 10.7.26, 14.1.23)

제20조(고장 및 사고가 회복되었을 때의 처치) ①고장 및 사고가 회복되었을 때의 처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검사책임자는 시스템의 기능이 정상인가를 확인한 후 종합관제센터장 및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10.1, 2006.5.15, 2008.6.24, 10.7.26, 14.1.23)

2. 검사책임자는 시스템 사용 시 제1호의 보고를 받은 종합관제센터장으로부터 사용개시 승인을 받고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99.10.1, 2006.5.15, 14.1.23)

3. 제2호의 승인을 받은 검사책임자는 사용개시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4, 10.7.26, 14.1.23)

②고장 및 사고가 원인불명인 채 자연복구 되었을 때 검사책임자는 종합관제센터장과 협의에 따라 시스템의 각 부분을 정밀검사하여 정상적인 동작여부를 확인하고 상당기간 동작을 감시하여야 한다.(개정 99.10.1, 2006.5.15)

제21조(고장보고) 고장이 발생하거나 회복하였을 때에는 고장의 종류, 장소, 일시, 날씨, 상황, 원인 및 처치와 영향을 준 열차에 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8.1, 09.9.17)

제22조(고장의 분류) ①시스템의 고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착오해정

- 연동장치의 쇄정조건이 해제 되어서는 아니 될 때 해제 된 경우(개정 99.10.1)

2. 착오전환

- 선로전환기가 전환되어서는 아니 될 때 전환된 경우(개정 99.10.1)

3. 착오신호현시

- 진로개통표시기(입환신호기 포함)가 정지신호를 현시 하여야 할 때 진행신호를 현시한 경우(개정 99.10.1)

4. ATC 착오신호

- ATC신호가 정지신호이어야 할 때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에 상당하는 주파수(속도코드)를 송신할 때.(개정 99.10.1)

5. ATC 부정신호

- ATC신호가 해당 주파수(속도코드)보다 높은 주파수(속도코드)를 송신할 때(개정 99.10.1)

6. ATO 무정보

- TWC장치가 송수신 불능이거나 무정보가 되었을 때.(개정 99.10.1)

7. 착오표시

- 진로표시기(문자형 포함)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될 때 표시하는 경우 또는 정당하지 아니한 진

로표시를 하였을 경우.(개정 99.10.1)

8. 해정불능

- 연동장치의 해정조건이 동작하여야 할 때 동작하지 않았을 경우

9. 전환불능

- 선로전환기가 전환되어야 할 때 전환되지 않는 경우(개정 99.10.1)

10. 현시불량

- 진로개통표시기, 입환신호기가 두가지의 신호를 현시하였을 때 또는 두가지의 신호를 교대로 현시 하였을 경우.(개정 99.10.1)

11. 현시불능

- 진로개통표시기, 입환신호기, Dwell Light가 소등 등의 원인으로 해당신호를 현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개정 99.10.1)

12. ATC 제한신호

- ATC신호가 해당 속도코드보다 낮은 속도코드를 송신할 때.(개정 99.10.1)

13. AT0 제한정보

- TWC 통신시 열차운전상 일부 기능을 저하시키는 정보를 송수신할 때 또는 PSM의 행동이 불량할 때.(개정 99.10.1)

14. 정지신호현시

- 진로개통표시기, 입환신호기가 진행신호를 현시하여야 할 때 정지신호를 현시 하였을 경우(개정 99.10.1)

15. ATC 무신호

- ATC신호의 송신 불능일 때 또는 차상에서 수신할 수 없는 주파수(속도코드)를 송신할 때.(개정 99.10.1)

16. 표시불량

- 입환신호기, 진로개통표시기의 진로표시기가 불명확한 표시를 하였을 경우.
- 선로가 개통되어 있을 때의 표시를 하여야 할 때 선로가 개통되지 않음을 표시하였을 경우.(개정 99.10.1)

17. 그 밖의(개정 09.9.17)

- 전항에 맞지 않는 각종의 고장 및 전원고장, 사고재해에 의한 피해, 도난 등에 기인하는 것.
- 여러 가지 고장이 함께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분류 순위에 따라 처리 한다.

### 제 3 장 검 사



제23조(검사의 중별) ①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0.7.26)

1. 정기검사 :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시스템별 검사주기는 내규로 정한다) 시스템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복원하는 검사 또는 시스템을 사용 조건하에 둔 채 종합기능을 조사 조정하는 검사.(개정 99.10.1)

- 2일검사(신설 11.9.28)
- 7일검사 (개정 08.6.24, 09.3.26, 10.7.26)
- 1개월검사(개정 10.7.26)
- 3개월검사(개정 10.7.26)
- 6개월검사(개정 10.7.26)
- 1년 검사(개정 10.7.26, 14.1.23)
- 3년 검사(개정 10.7.26, 14.1.23)

2. 임시검사 : 시스템을 신설, 개조, 수리하였을 때, 시스템의 이상이 우려되거나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행하는 검사.(개정 99.10.1, 09.9.17)

②사장은 신호시스템의 기능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항의 종류 이외의 특별검사를 지시할 수 있다.(개정 99.10.1)

③중점관리개소는 기술사업소장이 별도 선정하고 선정된 중점관리개소에 대해 주관부서장이 검사 기준 및 주기를 수립한다. (신설 16.12.26.)

제24조(검사의 책임자 및 시행자) ①시스템의 검사는 소장이 작성한 예정표에 따라 시행한다. 다만, 소장 부재 시에는 업무대행자에 의해 시행한다.(개정 99.10.1, 2008.6.24, 10.7.26, 14.1.23)

②소장은 시스템의 정상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규정 또는 연간 안전점검계획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개정 99.10.1, 10.7.26, 14.1.23)

제25조(유지관리의 기록) ①소장은 각종 검사의 결과 및 시스템에 이상이 있을 때의 조치 등에 관하여 시설물유지보수시스템(UTIMS)의 점검 및 검사표에 필요한 기록을 하여야 한다. 검사 및 점검표는 내규로 정한다.(개정 99.10.1, 2008.6.24, 09.9.17, 10.7.26, 14.1.23, 14.12.26)

② 신호분야 분야별 시설물 이력 및 유지보수 부품의 관리는 공사의 시설물유지보수시스템(UTIMS) 및 SMRT-Uffice 시스템 운영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신설 14.12.26)

[조 제목 개정 14.12.26]

제26조(검사기준 및 정비요령, 점검방법) 시스템의 검사기준 및 정비요령,점검방법은 내규로 정한다.(개정 99.10.1, 14.12.26)

[조 제목 개정 14.12.26]

제27조(유지관리 이행계획 수립) ① 시스템을 관장하는 각 소장은 다음 연도의 점검·보수·교체 계획, 개량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지원단장을 경유하여 신호처장에게 보고하고 적정하게 이행하여야 한

다.(개정 99.10.1, 2003.8.1, 2008.6.24, 09.9.17, 10.7.26 12.2.13, 14.1.23, 14.9.17, 14.12.26)

② 신호차장은 기술사업소 및 자체 계획을 검토 후, 신호분야 유지관리 이행계획을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신설 14.12.26)

[조 제목 개정 09.9.17, 14.12.26]

제27조의1(이행계획(점검, 보수, 교체, 개량) 대상 선정기준) 시스템의 점검, 보수, 교체, 개량 선정 기준은 내규로 정한다.

[본조 신설 14.12.26]

제28조(검사 결과의 보고 및 처리) ①제23조에 따른 검사결과는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 1. 2일, 7일검사 :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14.1.23)
- 2. 정기검사 : 소장은 각종 정기검사 연간실적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4.1.23)

②소장은 각종 검사의 결과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4.1.23)

(이조신설 2011.9.28)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120213 직제규정 제36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①~⑭생략

⑮신호시스템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중 “기술관리단장”을 “단장”으로 한다.

제27조 중 “기술2팀장”을 “신호팀장”으로 한다.

부칙(제733호, 2014.1.23)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